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3875호
2023. 5. 22.(월)



목 차

◆ 자치법규 등

[조 례]

제8694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4
제8695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8
제8696호	서울특별시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0
제8697호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2
제8698호	서울특별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	13
제8699호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25
제8700호	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27
제8701호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29
제8702호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2
제8703호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3
제8404호	서울특별시 줍깅 활성화 조례	34
제8705호	서울특별시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36
제8706호	서울특별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0
제8707호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2
제8708호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	43
제8709호	서울특별시 조례 만(滿) 나이 일괄개정조례	45
제8710호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	48
제8711호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0
제8712호	서울특별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52
제8713호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54
제8714호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5
제8715호	서울특별시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6
제8716호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57
제8717호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8
제8718호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9
제8719호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60
제8720호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	61
제8721호	서울특별시 화재예방법 등 소방 관련 상위법령 인용 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63
제8722호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67
제8723호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68

제8724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70
제8725호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71
제8726호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	72
제8727호	서울특별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73
제8728호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74
제8729호	서울특별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76
제8730호	서울특별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79
제8731호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80
제8732호	서울특별시 디지털미디어시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81
제8733호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83
제8734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85
제8735호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87
제8736호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90
제8737호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	91
제8738호	서울특별시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92
제8739호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94
제8740호	서울특별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96
제8741호	서울특별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101
제8742호	서울특별시 전락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06
제8743호	서울특별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09
제8744호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11
제8745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12
제8746호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13
제8747호	서울특별시립 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15
제8748호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17
제8749호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18
제8750호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20
제8751호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122
제8752호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123
제8753호	서울특별시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126
제8754호	서울특별시 대북 인도협력사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127
제8755호	서울특별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 폐지조례	128
제8756호	서울특별시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조례	129
제8757호	서울특별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31
제8758호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33
제8759호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일부개정조례	134

제8760호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137
제8761호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138
제8762호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140
제8763호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141
제8764호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43
제8765호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개정 등을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	145

자치법규 등

[조 례]

◆ 서울특별시조례 제8694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5월 22일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안전총괄실”을 “재난안전관리실”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안전총괄실)”을 “(재난안전관리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총괄실장”을 “재난안전관리실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호(종전의 제1호) 중 “안전관리계획, 재난예방·복구대책 수립 및 재난”을 “재난”으로 한다.

1. 안전관리계획, 재난예방·복구대책 수립

제4장제3절의 제목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로 한다.

제60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로 한다.

제69조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아동복지 상담전화 운영
3. 입소아동의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조사

제132조제6호 중 “제30조제4항”을 “같은 법 제30조제4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타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4항 중 “안전총괄실장”을 “재난안전관리실장”으로 한다.
- 제12조제3항 중 “안전총괄실장”을 “재난안전관리실장”으로 한다.
- 제31조제1항 중 “안전총괄실”을 “재난안전관리실”로 한다.
- ②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3조제1항제4호 중 “한강사업본부”를 “미래한강본부”로 같은 항 제7호 중 “안전총괄실”을 “재난안전관리실”로 한다.
- ③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제4항 중 “안전총괄실장”을 “재난안전관리실장”으로 한다.
- 제15조제6항 중 “안전총괄실”을 “재난안전관리실”로 한다.
- ④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2항 중 “안전총괄실장”을 “재난안전관리실장”으로 한다.
- ⑤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 중 “안전총괄실장”을 “재난안전관리실장”으로 한다.
- 제4조제1항제1호 중 “안전총괄실장”을 “재난안전관리실장”으로 한다.
- 별표1의 주요시설물 관리기관 중 “안전총괄실장”을 “재난안전관리실장”으로 한다.
- ⑥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제2호 중 “안전총괄실장”을 “재난안전관리실장”으로 한다.
- ⑦ 서울특별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2항 중 “안전총괄실장”을 “재난안전관리실장”으로 한다.
- ⑧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2조제3항 중 “안전총괄실장”을 “재난안전관리실장”으로 한다.
- ⑨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호 중 “안전총괄실장”을 “재난안전관리실장”으로 한다.
- 제8조제3항 중 “안전총괄실장”을 “재난안전관리실장”으로 한다.
- ⑩ 서울특별시 도로보수 건설기계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중 “안전총괄실장”을 “재난안전관리실장”으로 한다.
- ⑪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3항제8호 중 “안전총괄실장”을 “재난안전관리실장”으로 한다.
- ⑫ 서울특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2항 중 “안전총괄실장”을 “재난안전관리실장”으로 한다.
- ⑬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중 “안전총괄실”을 “재난안전관리실”로 한다.
- 별표의 기후환경본부 표 주관부서란 중 “생활환경과” 수임기관 중 “한강사업본부장”을 “미래한강본부장”으로 한다.
- 별표의 물순환안전국 표 주관부서란 중 “치수안전과” 수임기관 중 “한강사업본부장”을 “미래한강본부장”으로 한다.
- ⑭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2조제4항제1호 중 “한강사업본부장”을 “미래한강본부장”으로 한다.
- 별지제1호서식 중 “한강사업본부장 귀하”를 “미래한강본부장 귀하”로 한다.

- ⑮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한강사업본부장”을 “미래한강본부장”으로 한다.
- ⑯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중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로, “한강사업본부장”을 “미래한강본부장”으로 한다.
- ⑰ 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로, “한강사업본부장”을 “미래한강본부장”으로 한다.
- ⑱ 서울특별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나목 중 “한강사업본부”를 “미래한강본부”로 한다.
- ⑲ 서울특별시 세빛섬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및제7호 중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을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으로 한다.
- 제6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을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으로 한다.
제9조 중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을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제1호 중 “한강사업본부장”을 “미래한강본부장”으로 한다.
제12조제6항 중 “한강사업본부”를 “미래한강본부”로 한다.
- ⑳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한강사업본부장”을 “미래한강본부장”로 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재난총괄 기능 강화 및 새로운 행정수요 대응 등 민선8기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조직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강화를 위해 「안전총괄실」을 「재난안전관리실」로 개편 및 ‘재난상황관리과’ (4급) 신설

- ‘재난상황관리과’ (4급)를 신설하여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접수체계 마련
- ‘안전총괄과’ → ‘재난안전정책과’, ‘안전지원과’ → ‘재난안전예방과’로 재편

나. 새로운 행정수요 반영을 위한 핵심분야 기능 보강재편

- 한강르네상스 2.0 핵심과제 실행력 제고를 위해 「한강사업본부」를 「미래한강본부」로 명칭 변경하고 ‘수상사업부’ 기능 강화
- 그 밖에 「아동복지법」 개정(’ 20.10.)으로 아동학대조사 권한이 아동보호전문 기관에서 지자체(자치구)로 이관됨에 따라 ‘아동복지센터’의 소관사무 현행화

◆ 서울특별시조례 제8695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5월 22일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표 중 일반직공무원, 연구직·지도직공무원의 비율란 및 별정직공무원의 구분란, 비율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비율	3.5%이내	16.5%이내	37.0%이내	34.5%이내	7.0%이상	1.5%이내
----	--------	---------	---------	---------	--------	--------

비율	22%이내	78%이상	20%이내	80%이상
----	-------	-------	-------	-------

구분	4급상당 이상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이하
비율	34%이내	50%이내	12%이내	4%이상

별표 3의 표 중 비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비율	1%이내	3%이내	7%이내	8%이내	15%이내	33%이내	33%이상
----	------	------	------	------	-------	-------	-------

별표 4의 표 중 4급란, 4·5급란, 5급이하 소계란, 전문경력관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급	256	153	19	8	68	8
----	-----	-----	----	---	----	---

4·5급	9	9				
------	---	---	--	--	--	--

5급 이하 소계	10,248	
----------	--------	--

전문경력관 소계	149	
----------	-----	--

별표 5의 표 중 소방공무원 소방정란 및 소방령 이하 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소방정	32	3		29		
-----	----	---	--	----	--	--

소방령 이하 계	7,396	
----------	-------	--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재난총괄 기능 강화 및 새로운 행정수요 대응 등에 따라 인력을 조정하고, 효율적인 공무원 직급체계 운영을 위해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비율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안전총괄실」을 「재난안전관리실」로 개편하고 ‘재난상황관리과’ (4급, 소방정)를 신설하여 소방 인력 직급 조정
 - (직속기관) 소방령 이하△1 → (본청) 소방정+1
- 나. 신규자원회수시설 적기 건립 및 주민소통 강화를 위해 ‘자원회수시설추진반’ (4·5급)을 ‘자원회수시설과’ (4급)로 격상확대
 - (본청) 4·5급 △1 → 4급 +1
- 다.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물재생센터(4명) 및 도로사업소(8명)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을 위해 일반직을 전문경력관으로 정원 조정
 - (사업소) 5급 이하 △12 → 전문경력관(고압전기안전관리) +12
- 라. 정책기획 수요에 적시 대응 등을 위해 일반직, 연구지도직, 별정직 및 소방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조정 (별표2, 3)

◆ 서울특별시조례 제8696호

서울특별시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5월 22일

서울특별시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분의 50을”을 “전부 또는 일부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호(종전의 제1호) 중 “주관하는 경우”를 “주최·주관하는 경우 50% 감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경우”를 “경우 50% 감액”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가 주최·주관하는 경우 면제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세부공간 개편에 따라 공간별 대관료 및 대관료 감면규정을 개정하여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주최·주관 행사 진행 시 대관료 면제(제10조)

나.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세부 공간별 대관료 명시(별표 3)

- 1) 노들스탠드 대관료 내용 삭제 및 잔디마당 대관료에 통합
- 2) 노들라운지, 리허설스튜디오, 노들갤러리 1·2관 대관료 신설
- 3) 준비 및 철수 대관, 동절기 옥외공간 대관, 30일 이상의 장기 대관 시 대관료의 20% 범위 내에서 할인 가능함을 명시

[별표 3]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대관료(제9조제1항 관련)

구분		면적(㎡)	대관단위	대관료(원)	비고	
라이브하우스		1,320	1일	3,200,000	• 공연 1회 기준	
다목적 시설	다목적홀 숲	573	1일	960,000		
	세미나실 A	110	1시간	18,000		
	세미나실 B	83	1시간	14,000		
	세미나실 C	67	1시간	11,000		
옥외 공간	노들 마당	잔디마당	3,817	1일	4,400,000	• 3시간 이하 사용시 대관료의 35% 납부 • 3시간 초과~6시간 이하 사용시 관료의 70% 납부 • 6시간 초과 사용시 대관료 100% 납부
		노들스퀘어	4,038	1일	㎡당 1,200	
	기타 옥외 공간	숲 루프탑	516	1일	750,000	
		서가 루프탑	533	1일	830,000	
		테라스	192	1일	290,000	
		서가 뜰	325	1일	290,000	
		마켓 뜰	817	1일	740,000	
		라이브하우스 뜰	456	1일	410,000	
		다목적홀 뜰	251	1일	230,000	
기타 공간	노들서가 1층		211	1일	380,000	
	노들서가 2층		190	1일	350,000	
	노들라운지		557	1일	1,003,000	
	리허설스튜디오		118	4시간	200,000	
	노들갤러리 1관		837	1일	500,000	
	노들갤러리 2관		492	1일	290,000	

1. 상기 대관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2. 주말(토, 일) 대관료는 35% 범위 내에서 할증될 수 있음.
3. 라이브하우스에서 1일 2회 공연을 진행할 경우 대관료의 50% 금액이 추가됨.
4. 영리 목적을 위한 행사는 대관료의 50% 범위 내에서 할증될 수 있음.
5. 본 행사를 위한 준비 및 철수 대관료, 동절기(11 ~ 2월) 옥외공간의 대관료, 장기대관(30일 이상) 시 대관료는 20% 범위 내에서 할인될 수 있음.(중복할인 불가)

◆ 서울특별시조례 제8697호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5월 22일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부터 제14조, 제14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서식 청계천시설사용허가신청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청계천시민위원회는 2005년 복원된 청계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이용사항에 대한 자문을 목적으로 구성되었으나, 청계천 복원사업이 18년 경과된 현 시점에서 신규사업 발굴 및 협의사항이 없고 시설물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어 미운영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청계천시민위원회와 관련된 제12조(청계천시민위원회 설치), 제13조(회의), 제14조(분과위원회), 제14조의2(소위원회) 조항을 삭제함.

◆ **서울특별시조례 제8698호**

서울특별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5월 22일

서울특별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을 “외국인”으로 한다.

제3조 중 “둔,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를 “두고 있고, 출입국 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로, “자는”을 “외국인은”으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 중 “성명·생년월일·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제8조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제8조제2항 중 “구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를 “구분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 중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열람 기간·시간 및 장소”를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로, “청구인서명부”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경우에는 원본의 해당부분을”을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따른”을 “따른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의”로 한다.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을 “법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으로, “각호에 관한”을 “각 호 의”로, “위하여 서울특별시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위해 서울특별시 주민투표청구심의 회”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사
2.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
 4. 전자투표 · 전자개표의 실시
 5. 그 밖에 심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심의회 의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2.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3조(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 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법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제17조 및 제18조로 하며,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5조(심의회 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는 주민투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 ② 간사는 위원장의 요구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6조(심의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 제17조(중전의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5항에 따른”을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을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그 처리기간의”를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 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로 한다.
- ① 시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2항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증명서 교부의 경우 주민투표실시구역이 확정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한다.
- 제18조(중전의 제1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과

· 대담과 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옥외집회를 하는 경우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할 수 있다.

제19조 및 제2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④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⑤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⑥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20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와 제10조 4항 및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 실시구역 변경	[] 신청 [] 필요없음			
	<변경 사유>			

「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시장 귀하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4.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
5. 주민투표 실시구역변경란에는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중 특정 구, 동 또는 통·반에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예외적인 경우 신청하며,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유를 작성

【별지 제2호서식】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인)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별지 제3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서울특별시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별지 제4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서울특별시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인)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인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별지 제5호서식】

() 주민투표의 청구

청 구 인 서 명 부

서명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주민수 : 명

○○구 ○○동(○ 책 중 ○ 권)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수 임 자 (서명 또는 날인)

※ 작성요령

1. ()에는 주민투표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주민투표청구대상을 기재하며, 서명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철하고, 수임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기재한다.
2.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기재한다.
3. ○○구 ○○동(○책 중 ○권) 란에는 통·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통·반으로 작성한다.

청 구 인 서 명 부

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서명 또는 날인	서명 일자	비고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

【별지 제6호서식】

주민투표청구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시장 귀하				
※ 첨부서류 : 관련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별지 제7호서식】

이 의 신 청 서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대 상				
신 청 취 지				
신 청 사 유				

「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시장 귀하

※ 첨부서류 : 증빙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개정된 주민투표법을 반영하고, 기존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여 주민투표제도를 활성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투표법과의 중복 규정 삭제(제3,4조 삭제)

나.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관련 규정 신설(제8조1항, 제10조제1항)

다.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관련 규정 정비(제12조~14조)

라. 옥외집회(공개장소에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 관련 공직선거법 반영(제18조)

마. 통·반 단위로 청구인서명부 작성(제8조제2항)

바. 주민투표법 근거조항 변경 및 별지 서식 수정(제19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699호**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5월 22일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5제1항제1호 중 “당사자와”를 “신청인, 피해자, 피신청인 등(이하 “당사자”라 한다)과”로 한다.

제21조의9의 제목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지)”를 “(권고 및 후속 조치)”로 하여 제21조의 11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21조의9)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당사자”를 “당사자 및 조사대상기관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심의위원회는 성희롱·성폭력·2차 가해가 있었다고 판단한 경우 시장에게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정권고 통지를 받은 조사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내용을 존중하여 조치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권고에 따른 조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의10을 제21조의12로 하고, 제21조의9와 제21조의10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9(신청의 각하) ① 심의위원회는 제21조의2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각하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심의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청의 내용이 제21조의2 제2항에 규정된 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신청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3.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서 신청한 경우
 4. 신청이 제기될 당시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나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5. 신청인이 신청을 취하한 경우
 6.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심의위원회는 신청을 각하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의10(신청의 기각) ① 심의위원회는 신청을 조사한 결과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기각한다.

1. 신청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2. 조사 결과 성희롱·성폭력·2차 가해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심의위원회는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효율적 기능 수행을 위해 위원회에서 ‘각하’ 및 ‘기각’ 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력 강화를 위해 사건발생기관의 조치결과 보고의무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원회에서 ‘각하’ 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제21조의9 신설)
- 나. 위원회에서 ‘기각’ 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제21조의10 신설)
- 다. 시정권고 통지를 받은 사건발생기관은 시정권고에 따른 조치 결과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함(제21조의11)

◆ 서울특별시조례 제8700호

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5월 22일

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둔다”를 “둘 수 있다”로 한다.

제5조제4항의 항번호를 제5항으로 한다.

제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안전이 발생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구성하고, 해당 안전이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후 자동해산한다.

제5조제5항 중 “된다”를 “맡는다”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한강수계관리기금의”를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한강수계관리기금”을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를 “시장이 따로”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을 조정하려고 할 때 자문을 하는 것인데, 이러한 부과율 조정이 빈번하지 않으므로 위원회 운영 내실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자문이 필요할 때에만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현재 상설인 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를 “둔다”에서 “둘 수 있다”로 개정(제3조)

나. 위원회는 안전이 발생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구성하고, 해당 안전이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후 자동해산하도록 함(제5조제4항)

다. 위원의 임기 관련 조항 삭제(제6조)

라. 위원의 해촉 관련 규정 삭제(제10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701호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5월 22일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공원시설물
1. 수상이용시설	가. 선박(보트, 요트, 돛단배, 동력보트, 한강르네상스호, 한강아라호 인명구조선, 그 밖의 선박), 선박계류장, 선착장, 요트마리나, 수상콜택시 승강장 나. 여의도 물빛무대 다. 서울수상레포츠센터 라. 그 밖에 수상을 이용하는 시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운영에 직접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별표 2 제1호의 표 중 여의도물빛무대란 아래에 서울수상레포츠센터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 분		기 준 및 이 용 료		비 고
서울 수상레포츠 센터	수상계류장	일간이용료	월간이용료	1.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위탁 또는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이용료는 수탁자 또는 사용허가 대상자와 협의하여 본 조례에서 정하는 이용료의 범위 내에서 결정하고, 해당 이용료를 공고한다.
		7,000~35,000원	131,000~460,000원	
	육상계류장	일간이용료	월간이용료	2. 체험 프로그램의 이용료는 당일 1인 1회(2시간 이내) 기준이며, 교육 프로그램(10명 이상 신청 시 운영)의 이용료는 1인 기준이며 교육 횟수 및 시간 등은 따로 정한다.
		6,000~18,000원	119,000~302,000원	
	장비보관함	1일	4,000~10,000원	3. 경사면(슬립웨이) 이용료는 당일 왕복 기준의 금액이다. 다만, 계류장 이용료를 납부한 경우 경사면(슬립웨이) 이용료는 면제한다.
		1개월	50,000~110,000원	

구 분		기 준 및 이 용 료			비 고	
		1년	280,000~420,000원		4. 그 밖에 규정하지 않은 이용료는 유사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의 이용료에 준하여 부과한다. 5. 다음 각 목의 경우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가. 풍수해 등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시설물 정비 등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 각종 행사(국제대회, 축제, 공연 등)가 개최되는 경우 라. 그 밖에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수상레포츠 프로그램		어린이 (6~12세)	청소년 (13~18세)		성인 (19세 이상)
	체험	무동력	8,000~30,000원	10,000~36,000원		10,000~48,000원
		동력	20,000~50,000원			
	교육	무동력	40,000~100,000원			
경사면 (슬립웨이)		1일	6,000~20,000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한강 내 최초의 공용계류장인 서울수상레포츠센터(난지한강공원 내 소재)의 설치·운영 근거와 시설 이용료 기준을 신설함.

2. 주요내용

가. 서울수상레포츠센터를 공원이용시설에 추가(별표1 제1호)

나. 서울수상레포츠센터 이용료를 신설하여 이용료 징수의 근거를 마련(별표2제1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8702호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5월 22일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국공립”을 “국·공립 및 사립”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현행 조례상 국·공립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에 한정하여 운영되고 있는 학교보안관을 「초·중등교육법」 상의 사립 초등학교까지 확대·운영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학교안전 및 학생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조례 제2조제2호 중 “국공립”을 “국·공립 및 사립”으로 함(제2조제2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8703호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5월 22일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로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기에 불출석한 기간동안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③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와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아 실제로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와 여비를 수령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음. 출석정지 징계에 대해서도 의정활동비 등 지급을 제한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대외기관으로서 의회의 위상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구금상태 뿐 아니라 출석정지 징계의 경우에도 의정활동비 등 지급을 제한함(제6조제2~3항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8404호**

서울특별시 줌깅 활성화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줌깅 활성화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5월 22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줌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의 환경정화 및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줌깅”이란 가볍게 걸으며 주변의 쓰레기를 주워 건강과 환경을 함께 지키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줌깅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줌깅이 시민들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줌깅활성화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줌깅활성화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시민 참여 방안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재원 마련 및 효율적인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4.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줌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줌깅활성화 사업) ① 시장은 줌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지원
 2. 홍보·안내 및 교육 실시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시장은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줌깅도구 지원 및 사후관리
 2. 줌깅도구 등을 보관하는 자물청소함 등 설치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줌깅 주간 및 행사) ① 시장은 줌깅을 활성화하고 줌깅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9월 셋째주 토요일이 포함된 주를 줌깅 주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줍깅 주간에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이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줍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치구 및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포상 등) 시장은 줍깅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줍깅은 조깅을 하면서 동시에 쓰레기를 줍는 운동으로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민의 활동을 지원하고 건강도 증진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짐.
- 줍깅을 매개로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발맞춰 양극화되고 파편화된 서울특별시의 사회적 자본도 확충할 것으로 기대됨.
- 조례를 통한 제도 정립으로 도시환경의 질적 향상과 시민의 건강 증진을 이룰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의 특색에 맞춘 줍깅 문화를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줍깅을 가볍게 걸으며 주변의 쓰레기를 주워 건강과 환경을 함께 지키는 활동으로 정의함(제2조)
- 나. 줍깅활성화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규정함(제4조)
- 다. 줍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 추진에 관하여 규정함(제5조)
- 라. 매년 9월 셋째주 토요일이 포함된 주를 줍깅 주간으로 함(제6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705호**

서울특별시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5월 22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의 활성화 및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보조금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세버스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한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
2. 법 제27조의3에 따른 전세버스에 장착하는 영상기록장치 설치, 교체, 개선 사업
3. 전세버스 차량운행기록장치 설치, 교체, 개선 사업
4.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의 보수교육 지원 사업
5. 그 밖에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 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 보조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그에 따른 첨부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 지원 절차)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조 또는 융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2. 보조금의 적정성
3. 보조 또는 융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② 보조금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보조금 관리 및 환수) ①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시장이 지원한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한 자금의 사용 등 관리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전세버스운송사업자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을 받은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축소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나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2.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
 3. 지원받은 사업의 장치 또는 물품 등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4. 지원자금에 대한 조사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5. 시장의 지시사항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환수 조치당한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환수한 날로부터 3년간 시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전세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 년 월 일	
	사업체명		법인(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사업명칭				
등록종류		등록일자		등록번호
사업목적 및 내용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유				
사 업 비	총사업비	원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보조 : 원 융자 : 원
자기자본액	원		자기자본 부담액	원
사업기간				
위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지원자금을 보조·융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거래은행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보조금·융자금사용계획서 3. 법인등기부등본 4. 주주총회 결의록 5. 법인인감증명서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전세버스운송사업의 활성화 및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여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확충 사업, 영상기록장치 설치·교체·개선 사업 등을 하는 전세버스 운송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제1조부터 제2조까지)

나.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업을 규정함(제3조)

다. 보조금 신청, 지원 절차, 관리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부터 제6조까지)

◆ 서울특별시조례 제8706호

서울특별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5월 22일

서울특별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발달지연 영유아”란 발달 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발달 지연을 보이는 등 장애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영유아를 말한다.

제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호(중전의 제5호) 중 “필요하다고”를 “시장이 필요하다고”로 한다.

3. 발달지연 영유아에 대한 의료지원 등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사업
4.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 및 발달지연 영유아 및 보호자를 위한 교육·정보제공 지원사업

제10조 중 “자치구, 기관 및 단체 등에서”를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로, “사람”을 “영유아 등”으로 한다.

제11조 중 “위하여”를 “위하여 자치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최근 또래 영유아와는 다른 행동이나 발달 양상을 보이는 '발달지연 영유아'에 대한 지원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이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발달지연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발달지연 영유아’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제2조제5호 신설).

나. 지원사업으로 발달지연 영유아에 대한 의료지원 등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사업, 발달지연 영유아 및 보호자를 위한 교육·정보제공 지원사업 등을 규정함(제8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707호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5월 22일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하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제 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주택공급 및 주거안정 지원
3. 양육·보육·교육 등의 지원
4. 보건·의료, 복지, 교통 등의 비용 지원
5. 공공요금 감면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해 다자녀 가족에 대하여 주거안정 지원, 양육·보육·교육 지원, 의료·복지·교통 지원 등 포괄적인 지원정책을 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다자녀 가족의 지원 사업으로 주택공급 및 주거안정 지원 사항을 추가함(제5조제2호).
- 나. 양육·보육·교육 등의 지원 규정 신설(제5조제3호).
- 다. 보건·의료, 복지, 교통 등의 비용 지원 규정 신설(제5조제4호).
- 라. 공공요금 감면 규정 신설(제5조제5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8708호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5월 22일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지역주택조합 가입 안내서) ① 시장은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 조합 가입 신청자의 권리보호 및 피해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주택조합 가입 안내서(이하 “안내서”라 한다)를 제작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1. 지역주택조합 가입 절차 및 방법
2. 지역주택조합 가입 유의사항
3. 지역주택조합 관련 피해사례
4. 그 밖에 지역주택조합 가입에 필요한 정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작된 안내서가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자 치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될 수 있도록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성공률은 상당히 낮고 조합원의 다양한 피해 사례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조합 가입 전, 가입 신청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은 지역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권리보호 및 피해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주택조합 가입 안내서’를 제작 및 배포(제4조의2제1항 신설)

1. 지역주택조합 가입 절차 및 방법
2. 지역주택조합 가입 유의사항
3. 지역주택조합 관련 피해사례
4. 그 밖에 지역주택조합 가입에 필요한 정보

나.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작된 가입 안내서가 자치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될 수 있도록 구청장과 협의(제4조의2제2항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8709호**

서울특별시 조례 만(滿) 나이 일괄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조례 만(滿) 나이 일괄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5월 22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조례에서 법규와 다르게 나이에 만(滿)을 표시하는 규정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2호 중 “만 40세”를 “40세”로, 같은 조 제4항 중 “만 5세”를 “5세”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노동청소년 보호 및 고용 우수업체 선정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노동청소년 보호 및 고용 우수업체 선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호제1호 중 “만 19세”를 “19세”로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만 19세”를 “19세”로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7호 중 “어르신(만 65세 이상)”을 “어르신(65세 이상)”으로 한다.

제6조(「서울특별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 18세”를 “18세”로 한다.

제7조(「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 12세”를 “12세”로, “만 12세 이상 만 19세”를 “12세 이상 19세”로 한다.

제8조(「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만 19세 이상 만 39세”를 “19세 이상 39세”로 한다.

제9조(「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만 12세”를 “12세”로 한다.

제10조(「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 10세 이상 만 19세”를 “10세 이상 19세”로 하고, 제4조제2항 중 “만 21세”를 “21세”로 한다.

제11조(「서울특별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만 40세 이상 만 65세”를 “40세 이상 65세”로 한다.

제12조(「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만 15세”를 “15세”로 한다.

제13조(「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만 19세”를 “19세”로, 제21조제4항제1호 중 “만 19세”를 “19세”로 한다.

제14조(「서울특별시 청년 장애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청년 장애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만 19세”를 “19세”로 한다.

제15조(「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만 39세”를 “39세”로 한다.

제16조(「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9호 중 “만 18세”를 “18세”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0호 중 “만 18세”를 “18세”로 한다.

제17조(「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2호 중 “만 40세”를 “40세”로, 같은 조 제4항 중 “만 5세”를 “5세”로 한다.

제18조(「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 19세”를 “19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2022년 12월 27일 「민법」 및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에서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함을 명확히 규정하였음.
- 상위 법령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만 ○○세”를 “○○세”로 하도록 개정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조례를 상위 법령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조례에서 “만 ○○세”로 규정하던 것을 “○○세”로 변경함.

◆ 서울특별시조례 제8710호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5월 22일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 제목 “(동물생명존중헌장)”을 “(동물생명존중헌장 및 동물보호의 날)”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10월 4일을 서울 동물보호의 날로 한다.

③ 시장 또는 구청장은 서울 동물보호의 날에 적합한 행사 개최 및 관련 사업을 실시하거나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민간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시장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반려동물 입양 교육을 수료한 경우(내장형 무선식별장치에 한함): 전액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반려동물 보호자의 의무교육 필요성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를 반영하여 성숙한 반려인 양성을 위해 지원책을 마련하고, 동물보호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를 위해 ‘서울 동물보호의 날’을 지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울 동물보호의 날’을 정하고, 적합한 행사 개최 및 관련 사업의 실시와 관련 민간단체의 활동을 지원(제12조)

나. 반려동물 입양 교육을 수료한 경우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수수료 감면(제25조제8호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8711호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5월 22일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제5조제3항 중 “소요되는”을 “드는”으로 한다.

안 제6조제4항을 삭제한다.

안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을 “대한 전문적 식견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으로 한다.

안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약서의 내용은”을 “협약서는”으로, “정하여 체결한다”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옥상녹화 협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며, 관리책임자”를 “관리책임자”로 한다.

③ 옥상녹화 협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며, 5년 단위로 협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협약 연장 당시 옥상녹화 조성지역의 상태에 따라 협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안 제1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3항에 따라 협약기간 내 옥상녹화 조성지역에 대해서는 수목 보식 등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안 제12조의 제목 “(시설 점검)”을 “(시설점검)”으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시설점검) 시장은 옥상녹화 조성지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시설점검을 통해 유지·관리 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옥상녹화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점검은 준공 이후 5년에 한해 진행한다.

안 별표 2 제3호 중 “80%”를 “60%”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협약기간을 연장한 옥상녹화 조성지에 대해서도 수목 보식(補植) 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옥상녹화 대상지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유도하고, 녹지율 기준을 완화하여 옥상녹화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협약기간 5년 단위 연장 규정 및 단서 조항 신설(제10조제3항).

나. 협약기간을 연장한 옥상녹화 조성지역에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제4항 신설).

다. 옥상녹화 식재기준의 녹지율을 완화함(별표 2).

◆ 서울특별시조례 제8712호

서울특별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5월 22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에 대한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자치구청장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3조(지원) 서울특별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착한가격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표지판
2. 각종 소모품과 기자재 구입비
3. 종량제쓰레기봉투 지원
4.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
5.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이용 활성화)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현황 점검 등)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치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유공자 표창)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에게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고물가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과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제1조, 제2조)
- 나.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사항(제3조)
- 다. 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제4조)
- 라. 운영현황 점검 등에 관한 사항(제5조)
- 마. 포상에 관한 사항(제6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713호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5월 22일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신청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제외되어 있으므로 이들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신청시 수수료 면제 대상에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추가함(제19조제1항제3호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8714호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5월 22일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이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한 「공인 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 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계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⑤ 시장은 제4항의 회계감사 실시에 따른 수수료 등을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회계감사대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시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회계감사 실시 근거를 규정함(제8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8715호

서울특별시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5월 22일

서울특별시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시장은 소음기·소음덮개를 떼어 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인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그 신고내용이 법 35조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건당 20만원 이내에서 그 위반행위의 과태료의 10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하며, 포상금의 지급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자동차의 소음기·소음덮개의 제거 또는 경음기 부착 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소음기·소음덮개를 떼어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인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14조의2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8716호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5월 22일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영 제71조 제5항과 제6항에 따라”를 “영 제71조 제6항과 제7항에 따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의 상위법령인 「도로법 시행령」이 2022. 11. 1.자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도로법 시행령」 조문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9조제2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 조문을 수정함.

- “영 제71조 제5항과 제6항에 따라”를 “영 제71조 제6항과 제7항에 따라”로 수정

◆ 서울특별시조례 제8717호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5월 22일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 중 “지역주민의 감면율은 40%”를 “지역주민의 감면율은 60%”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물재생센터에 설치된 체육시설과 주차시설의 지역주민 감면율을 기존 40%에서 60%로 조정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 인근 지역주민 민원을 최소화하고 복지향상을 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별표 3 물재생센터에 설치된 체육시설과 주차시설의 지역주민 감면율을 “40%”에서 “60%”로 함(별표 3).

◆ 서울특별시조례 제8718호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5월 22일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한옥건축양식: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공사비용의 50퍼센트 이내에서 보조 및 용자지원
5. 위원회 심의를 통해 한옥 전통양식을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한옥의 경우: 제1호부터 제3호에 의한 보조 및 용자금의 최대한도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추가로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한옥의 진화로 다양한 한옥과 한옥을 재해석한 현대건축물이 등장하고 있는바, 건축가와 시민의 자율성 및 창의성을 존중하는 보다 편리하고 창의적인 한옥이 지어질 수 있도록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한옥건축양식 공사비용의 50퍼센트 이내에서 보조 및 용자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21조제2항제4호)
- 나. 위원회에서 한옥 전통양식을 반영하였다고 인정한 경우 보조 및 용자금 최대한도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21조제2항제5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8719호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5월 22일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본문 중 “60명”을 “100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건축계획, 굴토, 구조, 해체 등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이 확대되며 심의 안건은 증가하였으나, 현행 조례는 자치구 건축위원회 규모를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150명 이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60명 이내’로 제한하고 있음.
- 위와 같은 제한으로 여러 자치구에서 다양한 분야의 안건 처리에 적합한 건축위원 선정이 어렵다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바, 합리적이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자치구 건축위원회 상한 인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자치구에 두는 건축위원회 규모를 최대 100명 이내로 확대함(제5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720호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5월 22일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포장재”란 제품의 수송, 보관, 취급, 사용 등의 과정에서 제품의 가치·상태를 보호하거나 품질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품의 포장에 사용된 재료나 용기 등을 말한다.

제4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다회용품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전년도 추진계획의 실적과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 제목“(교육 및 홍보 등)”을“(지원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3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1회용품 및 포장재 사용 저감을 위한 사업
4. 다회용품 활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최근 1인가구 증가와 코로나19로 인한 배달 및 소규모 구매 확대 등으로 국내 1회용품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환경오염과 자원낭비 등이 심각해지고 있음.
- 우리 사회가 직면한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민간의 1회용품 사용을 강력히 억제하고, 다회용품 사용을 권장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포장재의 정의 규정 신설함(제2조제4호)
- 나. 다회용품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추진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제4조제2항제5호 신설).
- 다.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제4조제3항 신설).
- 라.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구체화 함(제7조1항 제3호 및 4호 신설).
 - 1회용품 및 포장재 사용 저감을 위한 사업
 - 다회용품 활용 시설 설치 및 운영 사업

◆ 서울특별시조례 제8721호

서울특별시 화재예방법 등 소방 관련 상위법령 인용 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화재예방법 등 소방 관련 상위법령 인용 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5월 22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조례에서 전부개정 이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기본법」 등 소방 관련 상위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일괄정비하여 법적 체계정합성을 확보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이를 통하여 시민의 권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공 시설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3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로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 다중이용시설 등 소방훈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다중이용시설 등 소방훈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가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으로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하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3에 따라”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라 위반행위의 신고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제7조(「서울특별시 소방안전지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소방안전지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조(「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8조제1항”을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 중 “법 제9조”를 “법 제12조”로 한다.

제9조(「서울특별시 지하공공보도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지하공공보도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조(「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기본법」”을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을 “법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에 따라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제1항 중 “법 제19조제2항”을 “「소방기본법」 제1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법 제19조제2항제6호”를 “「소방기본법」 제19조제2항제6호”로, “법 제2

조제1호”를 “「소방기본법」 제2조제1호”로, “법 제2조제2호”를 “「소방기본법」 제2조제2호”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법 제56조제1항제2호”를 “법 제52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11조(「서울특별시 한옥밀집지역 소방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한옥밀집지역 소방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법 제2조제3호”를 “「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로 한다.

2. “화재예방강화지구”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4조의 제목 “(화재경계지구의 지정)”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화재경계지구”를 “화재예방강화지구”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소방특별조사 및 소방훈련 등)”을 “(화재안전조사 및 소방훈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13조제3항”을 “법 제18조제3항”으로, “화재경계지구”를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소방특별조사”를 “화재안전조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3조제5항”을 “법 제18조제5항”으로, “화재경계지구”를 “화재예방강화지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화재 예방정책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되었으며, 「소방기본법」 등이 개편되었음.
- 위와 같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서울특별시 조례에 적시에 반영함으로써 법적 체계정합성을 확보하고 자치법규의 접근성을 개선하며, 이를 통해 시민의 권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개정 이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소방기본법」 등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의 규정을 정비함.

◆ 서울특별시조례 제8722호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5월 22일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폐지이유와 주요내용 >

1. 폐지이유

-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2013. 8.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부패 신고 및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 등을 포괄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는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기능 및 목적이 중복되고 독자적 실효성을 찾기 어려움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여 규정의 통일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 서울특별시조례 제8723호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5월 22일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조제4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제12호, 제13호 및 제15호
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및 제3호
- ⑤ 제3항에 따른 생활보조수당과 제4항에 따른 보훈예우수당 및 다음 각 호의 수당은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2.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보훈명예수당 및 생활지원수당
 3. 그 밖에 다른 조례(자치구 조례는 제외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지급되는 수당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서울시 ‘보훈예우수당’의 지급대상 범위를 현행 ‘4·19혁명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에서 ‘전상군경(戰傷軍警), 공상군경(公傷軍警) 및 공상공무원’까지 확대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고, 보훈수당 지급의 형평성과 일관성을 기하고자 함.
- 한편, 단서 규정은 주된 내용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서 그 내용 및 적용범위가 명확해야 하나, 현행 조례에서 ‘보훈수당 중복지급 금지 규정’의 내용 및 적용범위가 불명확하여 해석과 적용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정비하여 입법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에 전상군경, 공상군경 및 공상공무원을 추가하여 규정함(제7조제4항제1호).
- 나. 현행 제7조제3항제4호 단서 및 제4항제3호 단서에 규정되어 있는 보훈수당 중복지급 금지 관련 내용을 별개의 항으로 신설하여 명확히 규정함(제7조제5항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8724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5월 22일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1항 중 “10년”을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5일, 10년”으로, “10일”을 “15일”로, “20일”을 “25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서울시는 지난 2014년부터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20일의 휴가를 시행하고 있으나,
- 서울시 산하 일부 자치구에서는 최근 들어 5년 이상 재직 시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고, 30년 이상 재직 시는 30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며, 울산광역시와 산하 자치구에서는 장기재직휴가 기간을 50일로 늘렸고, 전주시에서는 40년 이상 재직자 10일 휴가를 추가하고 있는 추세 등을 감안해 볼 때,
- 서울시 본청 근무 공무원들이 자치구보다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장기재직휴가에서 상대적 차별을 받는 것은 용인하기 어려우며 특히 일부 타시도 지자체에서도 장기재직휴가를 개선하는 사례가 보편화될 것으로 보여 우리시도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2. 주요내용

- 소속기관의 장은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5일,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5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25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제24조제11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8725호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5월 22일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1항 중 “10년”을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5일, 10년”으로, “10일”을 “15일”로, “20일”을 “25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서울시의회는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20일의 휴가를 시행하고 있으나
- 서울시 산하 일부 자치구에서는 최근 들어 5년 이상 재직 시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고, 30년 이상 재직 시는 30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며, 울산광역시와 산하 자치구에서는 장기재직휴가 기간을 50일로 늘렸고, 전주시에서는 40년 이상 재직자 10일 휴가를 추가하고 있는 추세 등을 감안해 볼 때,
- 서울시의회 근무 공무원들이 장기재직휴가에서 상대적 차별을 받는 것은 용인하기 어려우며 특히 일부 타시도 지자체에서도 장기재직휴가를 개선하는 사례가 보편화될 것으로 보여 우리 시의회도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2. 주요내용

- 의장은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5일,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5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25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 (제29조제11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8726호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5월 22일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4항 중 “15세제곱미터”를 “17세제곱미터”로 한다.

별표 1의 자.의 구분내용란 자목 중 “고시원”을 “다중생활시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0월 납기요금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최근 오피스텔 등의 평수형태 등이 다양해지면서 주거용과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 1가구당 세대원 수가 늘어나는 경우가 많아 세대당 월 15세제곱미터를 초과 사용하여 비싼 일반용 수도 요금을 부담하는 가구가 발생하고 있어, 1개의 수도계량기로 다른 업종과 가정용을 함께 사용하는 모든 세대에 대해 가정용 요금 적용 기준을 세대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에서 월 17세제곱미터까지로 상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량 중 세대당 월 17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제29조제4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8727호

**서울특별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5월 22일

서울특별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를 “서울특별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및 제3조 중 “관광취약계층”을 각각 “관광약자”로 하고

제4조제1항과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중 “관광취약계층을”을 각각 “관광약자를”로 하며 제6조 및 제7조 중 “관광취약계층을”을 “관광약자를”로 한다.

제8조 중 “관광취약계층”을 “관광약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시의 정책기조에 맞춰 조례 제명, 목적 및 관광지원기본계획 수립 방향 등을 기존의 “관광취약계층”에서 장애, 노령, 임신 등이 포함된 “관광약자”로 확대 적용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조례의 제명 및 목적, 책무, 관광지원기본계획, 민간참여의 촉진, 예산편성, 표창 대상을 “관광취약계층”에서 “관광약자”로 변경함(제1조,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728호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5월 22일

제1조 중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를 “시행령에서”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문화시민도시종합계획의 수립·시행)”을 “(문화도시종합계획의 수립·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문화시민도시종합계획”을 “문화도시종합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문화시민도시종합계획”을 각각 “문화도시종합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른 문화도시 구현을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을 지체없이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의 제목 “서울특별시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를 “서울특별시 문화도시위원회”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서울특별시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서울특별시 문화도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를 “문화도시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문화시민도시종합계획”을 “문화도시종합계획”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35명”을 “20명”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개인, 공동체, 지역, 도시, 협치 분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7명 이내”를 “5명 내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서울시는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종합계획을 10년 주기로 수립하고 있는데, 종합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이를 지체없이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조례명의 “문화도시”와 조문 내용의 “문화시민도시”라는 용어가 맞지 않아 오해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이를 “문화도시”로 통일함.
- 현재 장기간 미운영 중인 문화도시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현실적인 정책 반영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위원 및 분과위원회 구성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종합계획의 명칭을 “문화시민도시종합계획”에서 “문화도시종합계획”으로 변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제13조).
- 나. 제4장의 명칭을 “서울특별시 문화도시위원회”로 변경함.
- 다. 위원회의 명칭을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에서 “문화도시위원회”로 변경함(제15조).
- 라. 문화도시위원회 위촉위원수를 3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규모 축소하도록 개정을 추진함(제16조).
- 마. 문화도시위원회 분과위원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존 분과명 명시조항을 삭제하고, 위원수를 7명 이내에서 5명 내외로 적정화하도록 개정을 추진함(제21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729호**

서울특별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5월 22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반려식물산업의 성장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식물”이란 사람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식물을 말한다.
2. “반려식물산업”이란 반려식물과 관련한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등을 말한다.
3. “반려식물사업자”란 반려식물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식물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제4조(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반려식물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의 추진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반려식물사업자의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3. 반려식물산업 행사와 기술개발 및 연구 사업에 관한 사항
4. 반려식물산업 관련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소요되는 재원 마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반려식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반려식물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반려식물산업의 현황 및 기술개발 사항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 등) 시장은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려식물 관련 기술개발·보급
2. 복지시설 등 반려식물 보급 지원
3. 반려식물산업 사업자 경영 컨설팅
4. 반려식물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
5. 반려식물병원·클리닉 등 반려식물 관리 지원
6. 반려식물 관련 교육·체험·홍보시설 지원
7. 그 밖에 반려식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전문인력 양성) ① 시장은 반려식물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반려식물산업과 관련된 대학·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 등과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최근 들어 반려식물을 활용한 다양한 정책과 관심이 증가하면서 관련 산업 매출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음.
- 반려식물은 심리적·정서적 안정감 부여나 삶에 대한 만족도 고취 등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와 우울증 극복, 상대적으로 사회적 소외에 노출되기 쉬운 1인 가구의 심리적 안정성 증진, 다양한 신체적 질병의 치료, 공기정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뚜렷한 가시적 성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 서울시도 이러한 반려식물 효과에 집중해 반려식물 보급 및 관리 등 다양한 정책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러한 추세에 힘입어 침체의 늪에 빠져 있던 화훼 등 관련 산업분야 역시 회생의 희망을 얻고 있음.
- 하지만 아직 반려식물 및 관련 산업에 대한 명확한 법령 상 규정이 없는 바, 이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서울시의 핵심 산업군으로 육성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제1조)
-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각종 용어의 정의(제2조)
- 다. 시장의 책무(제3조)
- 라.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제4조)
- 마.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제5조)
- 바.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 등의 추진에 관한 사항(제6조)
- 사. 관계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제7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730호

서울특별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5월 22일

서울특별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기본계획의 적절성 및 타당성 항목의 심사기준란 제4호의 “1일”을 “평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 중 기본계획의 적절성 및 타당성 항목을 명확화·현실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 중 기관방문 기준을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에서 “평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으로 개정(별표).

◆ 서울특별시조례 제8731호

**서울특별시회의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회의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5월 22일

서울특별시회의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표로 하고, 같은 표(종전의 별표 1) 기본계획의 적절성 및 타당성 항목의 심사기준란 제4호의 “공휴일과 주말을 포함해 1일”을 “평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공무국외활동 심사기준 중 기본계획의 적절성 및 타당성 항목을 명확화·현실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공무국외활동 심사기준 중 기관방문 기준을 “공휴일과 주말을 포함해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에서 “평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으로 개정(별표).

◆ 서울특별시조례 제8732호

서울특별시 디지털미디어시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디지털미디어시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5월 22일

서울특별시 디지털미디어시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디지털미디어시티에”를 “시장은 디지털미디어시티에”로 하고, “시장의 정책자문에 응하고”를 “정책자문과”로 하며, “둔다”를 “구성할 수 있다”로 한다.

제14조 제1항 중 “3명”을 “2명”으로 한다.

제14조 제2항 중 “시장”을 “행정1부시장”으로, “2명”을 “1명”으로 한다.

제14조 제5항 중 “디지털미디어시티 담당정책관이 된다”를 “담당사무관으로 한다”로 한다.

제14조 제6항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하고, 위원의 임기는 회의가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15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디지털미디어시티 공급부지의 대부분이 이미 매각되어 디지털미디어시티 기획위원회 안건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 비상설화 전환 필요성이 대두되어 위원회 정비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 또한 기획위원회 심의 기능 축소에 따른 당연직 위원장, 위원장 수, 간사 직급 현실화 등 조례 정비를 통해 효율적인 기획위원회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디지털미디어시티 기획위원회의 설치를 강행 규정에서 임의 규정으로 문구 수정함(제13조).
- 나. 당연직 위원장(시장에서 행정1부시장)과 위원장 수(3명에서 2명)를 변경하고, 간사의 직책을 현실화하며 위원회의 비상설화 명문화 및 해촉 규정 관련 조항을 정비함(제14조).
- 다. 상설위원회의 규정인 위원의 임기 조항은 삭제하고, 위원회 해촉 규정은 제14조에 삽입하였으므로 삭제함(제15조 삭제).

◆ 서울특별시조례 제8733호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5월 22일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영상산업 지원시설의 설치) ① 시장은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해 영상산업 지원 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영화 상영관 운영
2. 영화 관련 자료 수집 및 보관
3. 그 밖에 영상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지원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제12조에 따른 위탁을 받은 자는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지원시설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원시설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시 영상산업진흥 업무 소관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지원시설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자문한다.

1. 지원시설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지원시설 관리·운영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원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가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⑤ 지원시설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⑥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할 때
2. 질병, 장기 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

⑦ 제1항에 따른 위원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인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지원시설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지원시설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가칭)서울시네마테크 개관(2024. 3. 예정) 이전에 영상산업 지원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하고 성공적인 시설운영으로 서울특별시 영상문화 발전과 영상산업 진흥에 기여하고자 함.
- 서울시네마테크 시설 운영 및 활성화 방안 등 논의를 위한 지원시설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시설 운영에 대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시 영상문화의 발전과 영상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시설 설치·운영과 시설의 수행 기능을 적시한 조항 신설(제9조)
- 나. 지원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심의기구로서 지원시설운영위원회 설치·운영 및 심의사항을 적시한 조항 신설(제10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734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5월 22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5호까지”를 “제5호까지 및 제7호”로 한다.

제34조제6호 중 “법 제74조제2항제1호”를 “법 제74조제4항제1호”로 한다.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4조제2항제2호”를 “법 제74조제4항제2호”로 한다.

제38조제1항제3호 중 “법 제76조제1항제7호다목”을 “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4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2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의 상위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인용조항도 달라진 바,
- 조례가 인용하고 있는 법령 조항을 현행 법령과 일치시켜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자치법규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현행화

- 조례 제10조제1항, 제34조제6호, 제35조, 제38조제1항제3호, 별지 제6호 서식 등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인용 조문 수정

◆ **서울특별시조례 제8735호**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5월 22일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대중교통중심 지역”을 “대중교통 중심지역”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중교통 중심지역”이란 지하철 및 버스 등 대중교통의 편리한 이용이 가능한 지역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 가. “역세권”이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지하철, 국철 및 경전철 등의 역(승강장 기준으로 개통이 예정된 역을 포함한다)의 각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 19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역의 각 승강장 경계 및 출입구로부터 350미터 이내의 토지를 사업대상지로 지정할 수 있다.
 - 1) 역의 승강장 위치가 도로의 선형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
 - 2) 주변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간선도로변”이란 「도로법」 제14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고시한 특별시도 중 주간선 도로 및 보조간선도로의 경계에서 5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청년주택”이란”을 ““청년안심주택(이하 “청년주택”이라 한다)”이란”으로, “역세권”을 “대중교통 중심지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촉진지구 지정 대상인 경우 다음”을 “다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역세권”을 “대중교통 중심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역세권 내외”를 “대중교통 중심지역 내외”로, “역세권에”를

“대중교통 중심지역에”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를 “제19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제3항의”로 한다.

제7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2항제1호 본문 중 “사업대상지가 촉진지구 지정 대상인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사업대상지가 촉진지구 지정 대상인 경우 촉진지구지정등”을 “촉진지구지정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11조 중 “제7조제1항 및 제2항”을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에 따른 특례

제14조제2항제1호 중 “역세권”을 “대중교통 중심지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임대료의 부과·징수”를 “임대료·관리비의 부과·징수, 주거비지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역세권 범위에 대한 적용례) 제2조제1호의 개정 규정에 따른 역세권 범위의 적용은 이 조례 시행 후 제7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제출을 위하여 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역세권 범위 규정에 따라 청년주택 사업 추진을 위해 사전자문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토지를 매입(매매계약)한 경우는 종전 규정에 의한 사업범위를 적용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청년주택의 사업범위를 승강장으로부터 350m 이내에서 승강장으로부터 250m 내외를 원칙으로 변경하여 역 주변의 집중개발을 유도하고, 주택공급을 위해 현행 350m 이내 지역에 대해서도 주변 개발상황 등 여건이 양호한 곳은 사업을 허용하여 이면도로변 저층 주거지의 고밀개발에 따른 부영향을 줄이면서 공급을 지속하고자 함.
- 한편, 역세권과 다른없는 교통 여건과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는 간선도로변을 사업대상지에 포함하여 상대적으로 저개발된 강북지역의 간선도로변 개발을 촉진하여 주택공급 확대 및 강남과 강북 균형개발 도모.

2. 주요내용

- 가. 사업대상지 확대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함.
- 나. 청년주택의 사업범위를 역세권 350m로 일괄적용하던 것을 250m를 기준으로 하되 역세권 외 간선도로변을 사업대상지에 포함하여 주택공급 확대 및 강남과 강북 균형개발 도모 (제2조 등)

◆ 서울특별시조례 제8736호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5월 22일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를 제2호로 하고,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난임 지원이 대대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현행 조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음. 이에 난임 지원사업에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을 추가하여 난임부부의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난임극복 지원사업에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사업을 추가함(제7조제1항제1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8737호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5월 22일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5(어린이집의 폐지 등에 따른 조치) 시장은 어린이집이 폐지되거나 일정기간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 관할 구청장이 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영유아의 보육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성공적인 정착에 기여하고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에 이바지해야 함. 이에, 시장은 어린이집이 폐지되거나 일정기간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보육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청장과 협력하도록 함.

2. 주요내용

시장은 어린이집이 폐지되거나 일정기간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보육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할 구청장이 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협력할 수 있음을 규정함(제19조의5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8738호**

서울특별시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5월 22일

서울특별시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서울특별시”를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로 하고, 제1호나목 중 “「서울특별시 공무원 관리규정」”을 “「서울특별시 공무원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로 하며, 라목 중 “금품 등”을 “금품등”으로, 같은 조 제2호 중 “서울특별시”를 “서울시”로 한다.

제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2호는 제3호로, 제3호는 제4호로, 제4호는 제5호로 한다.

2. 청렴도 평가·조사

제6조의2부터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① 시장은 제6조의 사업을 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집·이용하여야 한다.

제6조의3(청렴 포상 등) 시장은 청렴 자율준수제 운영 및 청렴문화 조성 등에 크게 기여하거나 활동 실적이 우수한 서울시 소속 부서와 기관·단체 및 공직자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제3항 중 “1회에 한하여”는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13조 중 “서울특별시”는 “서울시”로 한다.

제17조는 삭제한다.

제22조제2항은 “서울특별시”는 “서울시”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조직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로 하고, “반부패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등”을 “반부패·청렴 우수사례 공모 등”으로 한다.

제24조 중 “결백하고”는 “결백하고,”로, “서울특별시”는 “서울시”로, “선정절차를”은 “선정 절차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자체공적심의위원회를”은 “자체 공적심의위원회를”로, “수상후보자에”는 “수상 후보자에”로, “서울특별시”는 “서울시”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구성 한다.”는 “구성한다.”로, “서울특별시”는 “서울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호선하며,”는 “호선(互選)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개의하고,”는 “개의(開議)하고,”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서울시 청렴도 평가,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고, 청렴 문화 조성 및 확산에 기여한 기관 및 공직자를 대상으로 포상 근거를 마련하여 청렴하고 공정한 문화를 자발적으로 조성·확산하는 활동을 장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청렴문화 활성화 사업에 청렴도 평가·조사 사업을 추가함(제6조제2호 신설)
- 나. 청렴문화 활성화 사업 수행 시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제6조의2 신설).
- 다. 청렴문화 조성 및 확산에 기여하거나 실적이 우수한 기관, 공직자에 대해 표창 및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6조의3 신설).
- 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부패예방 청렴활동의 범위를 넓히고자 함(제23조제2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8739호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5월 22일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지역성평등지수”란 국가성평등지표를 기초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성평등지표를 통해 계산하는 지수화된 값을 말한다.

제5조부터 제7조까지를 제6조부터 제8조까지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5조(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시장은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으로 선정·관리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추진사업
2.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년도 성별영향평가 대상 예산사업
3. 자치단체특화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가. 지역성평등지수가 낮은 분야사업
 - 나. 성별 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 다. 사업 운영 전반에 성인지 관점 반영이 필요한 사업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의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해 시장의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을 신설하고,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협의체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성평등지수” 정의를 신설함(제2조제5호).

나.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을 신설함(제5조).

다. 협의체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제9조제1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8740호**

서울특별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5월 22일

서울특별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노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동취약계층의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고 포용적인 지역 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무제공자”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의 적용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프리랜서”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적용받지 않고 계약의 형식과 무관하게 일정한 기업이나 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채 자유계약에 의해 일을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경우
2. 사업장 소재지를 시에 둔 경우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가 부당하고 불공정한 계약관계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노무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가 「근로기준법」 등에 명시된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하는 관행을 해소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와 지위향상, 안정적인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 보호 ·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 · 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의 보호 ·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업종별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보호 · 지원을 위한 대책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자원 조달 방안
4.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피해 예방 · 구제를 위한 교육 · 홍보
5.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보호 · 지원을 위한 법 · 제도 개선사항
6. 그 밖에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 보호 ·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해 시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노동기본계획에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의 기본계획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대신할 수 있다.

제7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 보호 ·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 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 ·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형태, 보수, 계약조건, 피해 등 노동환경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 ·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안전 · 보호를 위한 인프라 조성
 2.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노동조건 · 노동환경 개선
 3.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보호 · 지원을 위한 조사 · 연구
 4.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보호 · 지원을 위한 안전장구 등 필요물품 지원
 5.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6.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교육, 상담, 법률구제 등 서비스 제공
 7.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사업
 8. 그 밖에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시장은 제1항의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권익보호지침 등) ① 시장은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와 계약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보호지침(이하 “권익보호지침”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보급·적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와 공사·공단 및 출연·출자기관(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권익보호지침 등을 따르도록 하고, 서울특별시 구청장 또는 기업·기관·협회 등의 장에게 권익보호지침 등의 준수·적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 및 그 산하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조금 등을 받는 민간기업·기관·협회 등으로 하여금 권익보호지침 등을 따르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권익보호지침 등을 개발·보급·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표준계약서) ① 시장은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계약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업종별 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라 한다)를 개발하여 보급·적용한다.

② 시장은 시와 산하기관으로 하여금 표준계약서를 따르도록 하고, 서울특별시 구청장 또는 기업·기관·협회 등의 장에게 표준계약서의 준수·적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 및 산하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조금 등을 받는 민간기업·기관·협회 등으로 하여금 표준계약서를 따르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권익보호 지원센터) ① 시장은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의 부당 계약, 보수 지연지급 등 피해 예방 및 구제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보호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를 위한 법률·세무·노무 상담 · 대응 지원
2.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피해 예방 · 구제
3.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 · 홍보
4.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 보호를 위한 단체 설립 · 육성 지원
5. 그 밖에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 ·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무

제13조(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제12조의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기관·단체 지원) ① 시장은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를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과 단체가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설립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기관에 한한다.

1.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경력관리 지원
2.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3.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 개최
 4.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피해 사례 조사 · 보호를 위한 캠페인
 5. 서울특별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지원사업에 대한 정책제언
 6. 그 밖에 시장이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제1항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 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수립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기본계획은 이 조례에 따른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기본계획으로 본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종사자’)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특고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재정의하는 법 개정(’22. 5. 30. 개정, ’23. 7. 1. 시행)에 따라 용어 및 개념을 정비함.
- 비정형 노동자 지원 관련 유사 조례인 「서울특별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를 통합하여 「서울특별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명 및 조문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로 변경함(제2조).
- 나. 조례 적용대상에 “서울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을 포함하여 조례 적용대상을 확대함(제3조).
- 다.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관련 기본계획을 통합하고, 노동기본계획 수립 시기에 맞추어 3년으로 시기를 변경함(제6조부터 제7조까지).
- 라.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지원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 내용을 명시함(제9조)
- 마.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의 표준계약서 개발 근거를 마련함(제11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741호**

서울특별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5월 22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지역상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상권”이란 상가건물(「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상가건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자·임대인·임차인, 토지소유자, 주민 등이 어우러져 지역에 특화된 생활·문화·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상가건물 밀집지역을 말한다.
2. “지역상생구역”이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 나. 해당 구역 안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100개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 다.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을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
3.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 나.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구역 안에 100개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 다. 제15조에 따른 구역의 지정 신청 당시 사업체 수, 매출액 또는 인구수 중 2개 이상이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연평균 기준으로 최근 2년간 계속하여 감소한 곳
4. “지역상생협의체”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구성한 자율조직을 말한다.
5.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6. “활성화구역”이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을 말한다.
7. “로컬브랜드 상권”이란 지역의 역사·문화·관광자원 등을 활용하여 특색있는 지역기반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 시장이 지정한 상권을 말한다.

제2장 기본계획 수립 등

제3조(지역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을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별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다만, 활성화구역이 지정된 경우 매년 활성화구역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활성화구역 지정의 목표와 발전방향

2.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지역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역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그 계획을 시행하기 전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역상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태조사할 수 있다.

1. 임대료상승률 등 임대차 정보에 관한 사항

2. 상권의 매출액 변화에 관한 사항

3. 창업·폐업 및 종사자 수의 변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활성화구역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구청장, 법 제14조에 따른 지역상생협의체 또는 법 제19조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을 대표하는 자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활성화구역을 지정한 목적이 달성되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상생협의체 또는 자율상권조합에 대한 지원

2. 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3. 로컬브랜드 상권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장 지역상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지역상권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활성화구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역상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 해제
2. 활성화구역 내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조정
3. 그 밖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상권 활성화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상권 활성화 관련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갖추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교 · 연구소 등에서 교수(조교수 이상)나 연구원으로 재직중인 사람
 2.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재직 중인 사람
 3. 감정평가사 · 공인회계사 · 법무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④ 제3항에 따른 위원 구성 시 성별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인 경우에는 그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기간 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④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는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장기 출장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그 밖에 직무와 관련된 비위,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1년 단위(위촉일부터 기산(起算)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출석률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 ② 제1항제4호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위원의 1년 단위 참석대상 회의 개최 횟수가 1회인 경우
 2. 잔여임기 1년 미만 등으로 1년 단위 출석률 적용이 어려운 경우
 3. 천재지변, 응급상황, 그 밖에 위원회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시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기관, 지방공공단체, 학교, 사업자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의견의 표명, 그 외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지역공동체 당사자 간 공존과 상생의 협력적 이해관계를 증진하고 쇠퇴해가는 구도심 상권 활성화, 지역에 특화된 문화의 지속적인 발전 및 지역서민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시행(2022.4.28.) 됨.
- 이에 법령에서 위임한 지역상생구역 기준 및 활성화구역 운영, 지역별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지역상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로컬브랜드상권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장은 3년마다 지역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하고, 활성화구역이 지정된 경우 매년 활성화구역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제3조).
- 나. 활성화구역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실태조사 할 수 있도록 함(제4조).
- 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 및 사업지원 근거를 명시함(제5조 및 제6조).
- 라. 지역상권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위원의 임기, 제척·기피·회피, 해촉,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제7조부터 제13조까지).

◆ 서울특별시조례 제8742호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5월 22일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있는”을 “있어 법에서 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절차에 따라 결정·고시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있는”을 “있어 법에서 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절차에 따라 결정·고시된”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지정·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대상지는”을 “지정할 때에는”으로, “하나의 지역으로 하되, 이에 따른 세부적인 기준과 면적, 권장업종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지정하여야 한다”로 각각 하고, 다음과 같이 단서를 추가한다.

“다만, 지정 대상지역이 2개 이상 자치구에 걸쳐 있거나 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후 시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제4항 중 “구청장은 시장에게”를 “시장은 직접 또는 구청장의 신청을 받아”로, “선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를 “선정할 수 있다”로 한다.

제11조제5항 중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을 하고자”를 “제4항에 따라 시장이 직접 또는 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지정대상지를 선정하고자”로, “제출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제14조에 따른 진흥지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로 한다.

제11조제6항 및 제7항은 삭제한다.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진흥지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에서 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절차에 따라 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다.

1. 제12조제9항에 따른 평가 결과 진흥지구 지정의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관할 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진흥지구 지정해제 또는 변경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에 준하는 경우 제14조에 따른 진흥지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1조제4항에 따라 선정한 지정대상지를 취소·변경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 중 “제11조에 따라 시장이 진흥지구를 지정할 경우 구청장은”을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진흥지구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로, “지정 신청과 함께 진흥지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하고, 다음과 같이 단서를 추가한다.

“다만, 제11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진흥계획을 직접 수립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12조제6항 중 “제2항과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진흥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을 “시장 또는 구청장이 진흥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으로, “생략할 수 있다.”를 “생략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7항 및 제10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시장 또는 구청장은 산업환경 및 지역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 이 경우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13조제7항 중 “제11조제6항에 따른”을 “제11조의2 제1항에 따라”로 하고, “제12조제10항에 따라”는 삭제한다.

제14조제2항 중 제3호는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3. 당연직 위원 : 전략산업 또는 도시계획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 중 시장이 임명하는 자”

제14조제3항 중 “위촉직”은 삭제하고, “있고, 공무원인 위원의”는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과 의회 의원의”로 한다.

제14조제9항부터 제11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⑩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진흥지구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을 간사로 둔다.

⑪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면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참석한 사람은 안전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20조의2 제1항 제4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서울시는 일정 지역 내 집적도가 높거나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을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그러나 진흥지구 신청권한이 자치구청장에게만 부여되어 신청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시장이 자치구의 신청 없이도 진흥지구를 직접 지정하거나 진흥계획을 직접 수립·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비함으로써 사업 추진 동력을 제고하고자 함.
- 또한, 선정 절차 지연을 야기하는 산학협력사업심의위원회의 일부 기능을 정비하여 업무처리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및 “특정개발진흥지구”의 지정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정의 수정(제2조제4호 및 제5호)
- 나. 진흥지구 지정 및 진흥계획 수립을 자치구청장의 신청 없이 시장이 직접 할 수 있도록 규정(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1항)
- 다. 진흥지구의 지정해제변경 등에 관한 규정 신설(제11조의2)
- 라. 진흥계획의 수립 주기 규정(제12조제11항).
- 마. 진흥지구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부위원장 및 간사의 역할, 공무원인 위원에 대한 대리참석 규정 신설(제14조제9항~제11항).
- 바. 산학협력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관련, 협력사업의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삭제(제20조의2 제4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8743호

서울특별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5월 22일

서울특별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전통무예지도자”란 학교,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전통무예를 가르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통무예를 보존·진흥함에 있어 전통무예의 전형(典型)을 유지하면서 서울특별시 전통무예의 맥이 유지·발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1. 전통무예의 종목 복원 등 전통무예의 발전 및 활성화에 관한 연구
2. 전통무예 관련 선수, 전통무예지도자 등 전문인력의 육성·지원
3. 전통무예의 종목 간 및 종목 내 학술교류 활동 지원
4. 전통무예 관련 관광산업·문화콘텐츠산업 개발 및 기반 조성
5. 전통무예지도자를 활용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6. 전통무예의 국내외 위상 제고를 위한 지역 명소화
7. 전통무예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8. 그 밖에 시장이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내용·방법·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의 실태조사 근거 및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사항을 적시하는 등 전통무예 활성화 정책 수립과 관련 사업추진을 적극 도모 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함.

2. 주요내용

가. 전통무예지도자 정의를 신설함(제2조제3호).

나. 서울특별시시장의 책무로 전통무예를 보존·진흥함에 있어 전통무예의 전형을 유지하면서 서울시 전통무예의 맥이 유지·발전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함(제3조제3항).

다. 전통무예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필요 사업 추진 근거 조항을 신설함(제4조제1항).

라. 전통무예 진흥을 목적으로 서울시 사업추진을 위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함(제4조의2).

◆ 서울특별시조례 제8744호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5월 22일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 법조인, 사회복지전문가, 시민단체대표 ” 를 “ 법조인, 사회복지전문가, 교통전문가, 시민단체대표 ” 로 한다.

제8조제2항제2호다목 중 “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주변 ” 을 “ 버스승강장·택시승강장의 차량 진입방향 ” 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을 바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횡단보도에 근접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차량 접근 파악을 방해하는 시설물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보도상 영업시설물의 쾌적하고 깨끗한 상품의 상행위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보행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위원으로 교통전문가를 추가함(제4조)

나. 위치부적정 시설물 명확화(제8조제2항제2호)

-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의 차량 진입방향에 위치하여 버스,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의 진입 차량 확인을 방해하는 시설물(제8조제2항제2호 다목 개정)
- 횡단보도에 근접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차량 접근 파악을 방해하는 시설물(제8조제2항제2호 마목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8745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5월 22일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③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항1호나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등 경계선으로부터 100미터 이하의 지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9조제3항제1호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에 골목형상점가를 추가하여 도시미관에 어울리는 디자인을 갖추고 다양한 시각적 영상효과를 사용해 효과적인 정보전달 및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골목형상점가의 홍보를 돕고 불법현수막 감소로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에 골목형상점가를 추가 규정함(제9조제3항제1호 나목 개정).

◆ 서울특별시조례 제8746호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5월 22일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 중 “원룸형 주택”을 “소형 주택”으로, “원룸형 임대주택”을 “소형 임대주택”으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행복주택”을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소형주택”을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중 “원룸형 임대주택”을 “소형 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원룸형”을 “소형”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원룸형 주택”을 “소형 주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50제곱미터”를 “60제곱미터”로, “원룸형 주택”을 “소형 주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원룸형”을 “소형”으로 한다.

제11조의2의 제목 “(원룸형 임대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소형 임대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원룸형 임대주택”을 “소형 임대주택”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서울공공주택 공급 유형에 ‘통합공공임대주택’을 추가하고, 소형주택 관련 용어와 면적 기준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공공주택의 공급유형에 “통합공공임대주택”을 추가하고, 정비사업에서 인수하는 “소형주택”을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변경함(제8조제2항).

나. “원룸형 주택”, “원룸형 임대주택”을 각각 “소형 주택”, “소형 임대주택”으로 변경함(제2조제1호, 제11조 제목 및 제1항, 제11조의2).

다. 소형 주택의 면적을 “50제곱미터 이하”에서 “60제곱미터 이하”로 변경함(제11조제1항제2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8747호

서울특별시립 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5월 22일

서울특별시립 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기획전시실, 세미나실 등)”을 “(전시실, 강당 등)”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9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9.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10.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카드에 등재된 가족

11. 과학의 날·어린이 날·문화가 있는 날 방문객

② 시장은 과학관 관람객 증대, 공공목적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고,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적용을 받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3.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된 사람

4. 그 밖에 과학관 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4조제3호 중 “의무실, 수유실, 유아차·휠체어 대여소”를 “수유실, 유아차·휠체어 대여소”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한은 관장에 게 위임하며, 위임사항에 대해서는 과학관 내부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개관 및 휴관

2. 제6조에 따른 관람료 감면

3. 제10조에 따른 대관허가

4. 제12조에 따른 대관료 감면

5. 제13조제2항에 따른 대관에 관한 권리의 양도 승인

6. 제14조에 따른 판매시설 등의 설치·운영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과학관의 운영현황에 맞춰 시설물에 대한 조항을 정비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관람료 감면 등을 통한 다양한 행사를 기획·운영하기 위한 관람료 감면 및 권한의 위임 조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과학관의 독립성과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고, 과학문화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현재 다른 용도로 변경되거나 사용되지 않는 시설에 대한 내용 수정(제2조 및 제14조).
- 나. 관람료 면제 대상 및 감면 대상 정비(제6조제1항, 제3항).
- 다. 전문기관으로서 효율적인 업무추진 및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17조(관장)에 맞춰 권한의 위임 조항 신설(제18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748호**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5월 22일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정보취약계층 보호자”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보호자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6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정보취약계층 보호자가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사업내용을 제공 받고 교육에 참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디지털 기술의 발전상황에서 각종 정보 접근 기회가 차단되어 있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그 보호자의 기본적인 권리 확대 방안으로 특히 장애인의 보호자가 장애인 등 교육에 직접 참여하고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접근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보취약계층 보호자” 정의 규정 신설함(제2조제2호)

나. 정보취약계층 보호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제6조제5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8749호**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5월 22일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탄소중립”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탄소중립을 말한다.

제3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의 재정지원은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기후대응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의무화 방안에 대한 정책연구
 2. 민간건축물의 녹색건축물 도입 참여를 위한 지원 방안
 3. 기존 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을 위한 지원사업 발굴
 4. 중앙정부기관, 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조례의 정의와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에 탄소중립을 명시하여 추진방향을 명확히 하고, 공공 건축물과 민간건축물의 분야별 녹색건축물 조성 추진 시책을 활성화하도록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정의에 탄소중립의 개념을 명시함(제2조).

나.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조성계획에 명시함(제5조제2항제 6호 신설).

다.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건축물, 민간건축물의 분야별 정책 추진사항을 규정하고 정부기관과 민간기관에 대한 협력사항을 규정함(제8조제4항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8750호**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5월 22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제2항”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시장은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모를 거치지 않고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구청장인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년도 지방보조사업의 성과평가서를 매년 8월말까지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제1항 중 “처분 내용에 대해 주민에게”를 “처분 내용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는”을 “시장은”으로, “사항을 심의한다”를 “사항에 대해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3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 3의2. 제3조제2항에 따른 기준보조율을 규칙으로 정할 때

제32조제4항 중 “비치하여야 한다”를 “비치하고 작성된 회의록 내용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다만,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조례에 따라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보조금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방보조사업자의 공모 제외 사유를 신설함(제9조제4항).
- 나. 전년도 지방보조사업의 성과평가서를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신설함(제18조제2항).
- 다. 지방보조사업의 중요 처분 내용을 시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함(제22조제1항).
- 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회의 개최 시 작성된 회의록 내용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제32조제4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8751호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5월 22일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청년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청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의 고용·주거·교육·문화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하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 이를 반영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서울시의 효율적인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하여 분야별 청년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기본계획,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며 관련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청년 실태조사 및 예산 지원 근거, 시민 공개사항을 규정함(제7조의2).

◆ 서울특별시조례 제8752호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5월 22일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5년”을 “3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정기적으로 점검·평가”를 “점검·평가”로 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노동자 및 프리랜서 등 노동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2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1년 단위(위촉일부터 기산(起算)한다. 이하 이 조례에서 같다)의 출석률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 ② 제1항제3호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위원의 1년 단위 참석대상 회의 개최 횟수가 1회인 경우
 2. 잔여임기 1년 미만 등으로 1년 단위 출석률 적용이 어려운 경우
 3. 천재지변, 응급상황, 그 밖에 위원회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제24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15일 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1. 노동안전보건 분과위원회 :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확립에 관한 사항
2. 감정노동 분과위원회 :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3. 가사노동 분과위원회 :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

② 분과위원회는 각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제26조 중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를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노동권 보장을 위한 교육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12조에 따른 노동안전보건자문위원회와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른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위원회는 제25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노동안전보건 분과위원회’와 ‘감정노동 분과위원회’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년”을 “3년”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15명”을 “10명”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15명”을 “10명”으로 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디지털 경제성장 및 산업구조 재편에 따른 비정형 노동자 증가 등 급변하는 노동시장의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서울시 노동기본계획의 수립 시기 등을 조정하고, 유사 중복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통합하며, 해촉사유와 회의 일정 통보시기 등을 정비함.

2. 주요내용

- 가. 5년마다 수립하는 노동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으로 시기 변경함(제7조).
- 나. 위원 해촉 사유와 회의 일정 통보시기 등을 정비(제22조, 제24조)
- 다. 노동안전보건 분과위원회, 감정노동 분과위원회, 가사노동 분과위원회 등을 신설함(제25조).
- 라. 「서울특별시 노동권 보장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는 중복되어 폐지함(부칙 제2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753호

**서울특별시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5월 22일

서울특별시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으로 개성공업지구가 재가동될 것으로 전망하여 만든 조례이나 2016년 가동 전면 중단 이후 재개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를 제안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 서울특별시조례 제8754호

서울특별시 대북 인도협력사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대북 인도협력사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5월 22일

서울특별시 대북 인도협력사업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관한 사업”을 “관한 사업과 인도주의에 기초한 협력사업”으로 한다.

제4조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북한의 재해·재난 및 기근·질병 등에 대한 인도적 사업

제8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인도적 지원과 인도주의에 기초한 협력사업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에 대북지원사업자에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고, 정부 방침에 따라 서울수도 남북교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례가 중복하여 대북협력사업에 대해 규정할 필요성이 떨어짐.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대북 인도협력사업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되, 부칙에서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8조에 “인도주의에 기초한 협력사업” 문구를 신설함(부칙 제2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755호

서울특별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 폐지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5월 22일

서울특별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서울시는 시민의 삶의 질 제고와 행복 수준 향상을 위한 조사와 연구를 꾸준히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성장과 실질 시민 행복감 사이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이미 서울시가 복지 외 개발 등 정책과 연관하여 서울시민 행복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중복되는 데다가, 행복도는 주관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조례로 규정하기에는 추상적이므로 폐지를 제안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를 폐지함.

◆ **서울특별시조례 제8756호**

서울특별시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5월 22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계획을 확립하고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을 통해 미래 도시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래전략과제”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핵심과제를 말한다.
2.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경제, 사회 및 환경에서 현세대와 미래 세대의 공존을 위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제3조(미래전략과제의 범위) 이 조례를 적용하는 미래전략과제는 환경보전사업, 신기술기반사업, 공간개발사업, 지역주력산업, 신성장동력산업 및 삶의 질과 관련되는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업으로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미래전략과제를 발굴하고 육성해 나가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지원대상) 시장은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미래전략과제 발굴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나 시가 출자·출연 또는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5. 「민법」 제32조에 따라 중앙부처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
6. 지역에 분포한 분야별 산업 종사자를 주 회원으로 한 협회, 조합, 단체
7. 그 밖에 시장이 미래전략과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

서 지원할 수 있다.

1. 미래전략과제 및 주요 시책 개발을 위한 사업
2.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사업
3. 시 지속가능한 발전 확립, 확산 및 보급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지원절차 등) 제6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 신청 및 교부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계획을 확립하고 환경보전사업, 신기술기반사업, 공간개발사업, 지역주력산업, 신성장동력산업 등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업 발굴 및 육성을 통해 미래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미래전략과제’, ‘지속가능한 발전’ 등의 정의 규정(제2조)

나. 지역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미래전략과제를 발굴·육성해야 하는 시장의 책무를 정함(제4조).

다. 미래전략과제 발굴 시행 기관, 지원대상 사업과 지원절차 등을 정함(제6~8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757호

서울특별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5월 22일

서울특별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시민의 책무)”를 “(시민의 의무)”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안전취약계층”을 “안전취약계층(이하 “안전취약계층”이라 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 제7호와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을 통해 안전취약계층 및 침수취약지역 거주자가 재난 정보를 인지할 수 있는 방안
-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설치·운영하는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이 원활히 작동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서울시는 재난 발생 시 재난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기 위해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나 지난 8월에 내린 기습적인 폭우로 반지하 등 침수취약지역의 재산 및 인명피해가 발생한 바 있어 시장으로 하여금 안전취약계층 및 반지하 등 침수취약지역 거주자가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을 통해 재난정보를 인지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로 마련토록 하는 한편, 관리주체가 설치·운영하는 재난예보·경보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시장의 점검 권한을 부여코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을 운영함에 있어 시장이 사전에 조치해야 하는 사항에 안전취약계층 및 침수취약지역 거주자가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을 통해 재난 정보를 인지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함(제6조제1항제7호).
- 나. 시장으로 하여금 관리주체가 설치·운영하는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이 원활히 작동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함(제6조제4항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8758호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5월 22일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제41조”를 “제43조”로 한다.

제7조제7항 중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를 따라야 하며 거부 시에는 그 구체적 사유를 반드시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를 “영 제40조를 따라야 하며, 제출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 사유를 서면으로 반드시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의원요구자료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출 책임감을 제고하기 위해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고, 일부 조항은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면서 약칭 부분을 수정하는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법령체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함(제2조제2항)

나.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함(제7조제7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8759호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5월 22일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및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및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시장은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사별자의 애도할 권리 보장을 위하여 공영장례 일정 등의 부고를 게시하고 공영장례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별자와 자원봉사자 등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 중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로 한다.

제5조 중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를 “시행계획”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망시 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다음”을 “다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제1호~제3호”를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인정되는”을 “인정하는”으로 한다.

1. 시 내에서 사망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무연고 사망자. 다만,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관리하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장소와 관계없이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2. 사망 시, 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및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서 연고자가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3. 사망 시, 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

충을 위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독사로서 구청장·동장·마을공동체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

4.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경우로 연고자가 구속·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

제8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 ④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화장하여 봉안한 경우 사별자의 애도와 추모가 가능하도록 무연고 사망자 봉안 시설을 개방할 수 있다.

제9조제1항 중 “제6조 제1호 및 제2호”를 “제6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6조 제3호 및 제4호의 지원대상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의 연고자”를 “제6조제3호 및 제5호의 지원대상자는 연고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무연고 사망자 부고 게시를 통하여 시민 및 사별자에 대한 참여를 보장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보건복지부 「장사업무안내」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대상과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대상이 상이하여 그 대상을 동일하게 개정하고자 함. 또한 무연고 사망자 봉안시설인 ‘무연고 추모의 집’을 사별자가 애도할 수 있도록 봉안시설을 개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은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사별자의 애도할 권리 보장을 위하여 공영장례 일정 등의 부고를 게시하고 공영장례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별자와 자원봉사자 등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함(제3조제4항 신설)

나. 장례 지원대상자 정비(제6조제1호)

- 서울시 내에서 사망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시신인수를 거부·기피한 무연고 사망자. 다만,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관리하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장소와 관계없이 장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장례 지원대상자에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보호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경우로 연고자가 구속·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를 추가함(제6조제4호 신설).

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화장하여 봉안한 경우 사별자의 애도와 추모가 가능 하도록 무연고 사망자 봉안시설을 개방할 수 있도록 함(제8조제4항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8760호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5월 22일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서울특별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의 다중운집 행사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규모의 피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대규모 인원 밀집으로 인한 재난 또는 사고발생에 대비해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현행 조례 제2조제1호 재난의 정의 중 ‘사회재난’의 범주에 “「서울특별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의 다중운집행사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규모의 피해를 포함한다”를 명시함(제2조제1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8761호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5월 22일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생활체육 프로그램 및 관내 체육시설 등 생활체육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 사업

제1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1호의2 및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회에 참가하는 장애인 선수에 대한 보조 인력 지원

가.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나.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다.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라.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회

5의2. 장애인을 위한 체육활동 관련 정보 제공

② 시장은 시에서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은 시민의 체육활동 활성화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에게 개방·이용되는 관내 학교의 체육시설의 관리·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관내 학교의 다양한 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지역주민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통한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관내 학교 체육시설 개방 시 개보수 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학교 내 다양한 시설 확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또한 생활체육포털 운영을 통한 공공체육시설 정보 접근성 강화를 조례에 명시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체육시설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서울시 장애인 선수의 보조 인력 지원, 장애인 체육활동 편의 제공 등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향상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에 생활체육 프로그램 및 체육시설 등 생활체육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 사업을 명시함(제16조제8호 신설).
- 나. 서울시 장애인 선수가 대회 출전 시, 장애인 선수의 보조 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17조제1항 제1호의2 신설).
- 다.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에 장애인을 위한 체육활동 관련 정보 제공 규정함(제17조제1항 제5호의2 신설).
- 라. 장애인 체육활동 진흥 및 참여를 위한 편의제공 의무를 규정함(제17조제2항 신설).
- 마. 관내 학교 체육시설 개방 시 개보수 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학교 내 다양한 시설 확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함(제18조제5항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8762호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5월 22일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9호 및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률상담지원
8.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위한 홍보 및 피해 예방교육

제20조제2항제10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률상담지원
11.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위한 홍보 및 피해 예방교육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최근 사회적으로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임차인의 권리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요구되고 있음. 이에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률상담지원과 홍보 및 예방교육이 가능하도록 서울시 주거복지센터의 기능을 강화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 임차와 법률상담지원 및 피해 예방교육을 위해 주거복지센터의 기능을 확대함(제20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763호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5월 22일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청년주거 임대차 정보제공 등 지원) ① 시장은 주거용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소재 주택을 임차하려는 청년이 임대차 정보를 신청할 경우, 청년의 임대차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임대차계약 관련 법률상담
2. 임차료의 적정성 등 일반상담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에 따른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사항 안내
4. 안전한 임대차계약을 위한 홍보 및 피해 예방교육
5. 그 밖에 임차인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② 시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을 활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임대차 정보제공 등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거지원 관련 유관기관과 연계·협력할 수 있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9조 중 “제7조”를 “제7조 및 제7조의2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최근 사회적 약자인 청년층을 상대로 한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고통을 겪는 청년층이 크게 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 행위의 원인 중 하나로 부동산 임대차 시장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성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실거주 목적의 청년 임차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주거 관련 정보를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임차권 보호와 전세 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고 청년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임차를 위하여 시장이 임대차계약 관련 법률상담 지원, 임차료의 적정성 등 일반상담 지원, 피해 예방 교육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7조의2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8764호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5월 22일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위해「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9호”를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제9호”를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으로, “‘시설·장소’”를 “‘시설·장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를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관광진흥법」 제70조”를 “「관광진흥법」 제70조”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권 활성화 구역”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권활성화구역 및 이를 위한 「주차장법」 제2조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주차장법」 제2조”를 “「주차장법」 제2조”로, “시장”을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 중 “별표15의2”를 “별표 15의2”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설사용계약”을 “시설사용계약(시설관리자 등과 체결한 음

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장소의 사용계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 ”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장소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도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로에서의 영업신고가 수리되어 영업 중이거나 영업자 공모 또는 선정 등 영업 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는 제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를 정비하여 쾌적하고 공정한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 영업문화 정착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본 조례의 상위법령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5의2]의 2017년 개정사항을 조례에 연동하여 반영함(제1조, 제2조제1항, 제3조).

나. 서울특별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제외하고,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구역 및 이를 위한 「주차장법」 제2조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함(제2조제1항제3호 및 제5호).

다. 올바른 입법형식 및 표준어 규정에 맞춰 조례에 사용된 띄어쓰기, 약칭사용, 문장부호 등을 수정함(제1조, 제2조제1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8765호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개정 등을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개정 등을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5월 22일

제1조(「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입법담당관”을 각각 “법제담당관”으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입법담당관”을 “법제담당관”으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예산정책담당관”을 “재정분석담당관”으로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예산정책담당”을 “재정분석담당”으로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입법담당관”을 “법제담당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입법담당관”을 “법제담당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입법담당관”을 “법제담당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입법담당관”을 각각 “법제담당관”으로 한다.

제6조(「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의회사무국”을 “의회사무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조직개편(2023.1.16.)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사항을 일괄 정비하고, 실제 기관 명칭에 맞춰 ‘의회사무국’을 ‘의회사무처’로 개정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와 입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의회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입법담당관→법제담당관, 예산정책담당관→재정분석담당관) 변경 사항을 반영함(제1조부터 제5조까지).

나. 「지방자치법」에 맞춰 ‘의회사무국’을 ‘의회사무처’로 개정함(제6조).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